

-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,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대체교사 지원 가능
  - ※ (예시)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(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), 장애영유아·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(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),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
  - 단,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, 긴급사유 우선 지원
- 교사결임원장의 경우, 연간 최대 15일

【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】

| 구분      | 우선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 일수           | 비고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상시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수교육(직무교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일              | 사전 신청 |
|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결혼(우선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~5일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가   | 연간 1~15일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비군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훈련 기간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검진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        |       |
| 4       | 어린이집 자율관리(컨설팅)지원                  | 회당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5       |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            | 최대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긴급      | 최우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 | 기간 제한없음         | 수시 신청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| 1~10일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가족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일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                        | 3일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일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본인 질병 등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                     | 1~10일<br>최대 10일 |       |
|         | 모성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<br>최대 3일 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산 (~15주(10일)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일<br>최대 10일    |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 1일<br>최대 3일     |       |
| 일·가정 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| 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 1일<br>최대 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퇴직      | 보육교사의 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| 1~5일<br>최대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
\*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33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제25조제3항: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

\*\*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,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

\*\*\*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
\*\*\*\*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,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

\*\*\*\*\*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,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